

3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상장지수증권 조기청산 사유 투자설명서 기재의무 부여)
- 나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소액채권전담회원이 의무매수호가 제출 수량 명시)
- 다.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(기술특례 상장 유형 체계화 · 합리화)
- 라.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답테크 기업등에 대한 단수 전문평가 허용)
- 마.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(외부사업 감축량 매매거래기간 변경)
- 바.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(외국인 투자자 식별수단 확대)
- 사.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(투자경고 지정예고 및 지정에 초장기 불건전 요건 신설)
- 아. 주식 · 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(시장조성상품 배정방식 및 평가방식 등 개선)
- 자. 전문가회의 운영지침 (전문가집단 운영제도 폐지 및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)
- 차.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(사업모델기업의 전문 평가 관련 부분 삭제)

3. 한국거래소 규정*

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2023/12/7 개정 · 2023/12/11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신규상장신청인이 상장지수증권의 상장심사 요건인 조기청산 사유를 투자설명서에 기재하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상장지수증권의 조기청산 사유를 투자설명서에 기재하도록 의무 부여(제4조의2 및 별표 2의5)
 - 신규상장신청인이 제출하는 투자설명서를 기준으로 상장지수증권의 조기청산에 관한 표준화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
 - 상장지수증권 상장심사기준에 신규상장신청인이 조기청산 사유를 투자설명서에 기재하도록 명시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나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3/12/4 개정 · 2023/12/11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소액채권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소액채권시장의 매매제도와 소액채권전담회원에 대한 평가 및 지정 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
- 사전에 거래소에 신고한 회원에 한하여 채무증권에 대한 신탁호가의 제출을 허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소액채권전담회원이 의무매수호가 제출 수량 명시(제74조)
 - 소액채권전담회원이 장종료 단일가매매에서 제출해야 하는 의무 매수호가수량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제74조 제 2항에 따라 별도로 정해 시행해 오던 사항을 명시
 - 장종료 단일가매매시 의무매수호가수량

	제1종국민주택채권	서울도시철도채권등	지역개발채권	지방도시철도채권
당월물	12억원	2억원	4억원	2억원
전월물	2억원	1억원	1억원	1억원

- 매도대행사의 매도가격 변경(제76조)
 - 익일 매도 시 이자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, 전일 신고시장가격에 '경과일수 당 1원'을 가산한 가격으로 매도 허용
- 소액채권 시장조성호가 제출 스프레드 범위 정비(제99조의6)
 - 지역개발채권, 서울도시철도채권, 지방도시철도채권의 조성호가 제출 범위를 '민간평가사 시가평가수익률의 ± 20bp 이내'로 확대
- 소액채권전담회원 지정 방법 명료화(제62조 및 별표 2의5)
 - 재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150점 미만인 기존 회원은 재지정하지 않으며, 동 사유로 재지정되지 않은 회원은 2년간 회원으로 지정될 수 없음을 명료화
 - 우수소액채권전담회원 지정 방법 명료화
 - 전년도 말에 지정된 소액채권전담회원 수의 20% 이내에서 지정

- 소액채권전담회원 지정·지정취소 관련 특혜조항 마련(제62조 및 제63조)
 - 예상하지 못한 시장상황에 대비하여 소액채권전담회원 지정·지정취소에 있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특혜조항 신설

- 소액채권전담회원 평가방법 정비(별표 2의5)
 - 재지정을 위한 평가 및 지정 방법 중 신고수익률 괴리도 평가항목의 배점 상향, 의무매수호가수량 미제출시 감점 강화, 기타 평가항목의 평가항목 및 배점 조정 등을 통해 평가의 변별력 제고
 - 평가항목 배점을 (기존) 15점에서 (개정) 25점으로, 등급간 점수차를 (기존) 1점에서 (개정) 2점으로 상향
 - 채권수익률이 신고시장수익률보다 상승한 날 의무매수호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총 감점 점수를 (기존) 0.8점에서 (개정) 1.0점으로 상향
 - 시장조성 실적을 제외한 소액채권시장 기여도 항목을 정책협조(가점항목) 항목으로 옮기고, 정책협조(가점항목)의 배점을 (기존) 10점에서 (개정) 15점으로 상향

- 신탁호가 사전 신고제도 도입근거 마련(제9조의3)
 - 회원사의 결제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하여, 채무증권에 대한 신탁호가를 제출하려는 회원사는 이를 사전에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규정에 명시

다.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(2023/12/27 개정 · 2024/1/1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우수 기술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및 기술특례 관련 규율 강화를 위하여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개편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기술특례 상장 유형 체계화·합리화(제2조, 제30조, 제63조, 제75조)
 - 기술특례상장 유형을 기술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혁신기술 트랙(혁신기술기업)과 사업모델의 경쟁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사업모델 트랙(사업모델기업)으로 개편
 - 전문평가기관의 기술성 등에 대한 평가를 받아 상장예비심사 청구
 - 상장주선인(증권사)의 추천을 받아 상장예비심사 청구

- 상장주선인 책임성 부여 장치 강화(제13조 제5항·제7항)
 - 부실 실사 전력이 있는 상장주선인에 대하여 풋백옵션 부여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인수주식에 대한 보호예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

- 기술특례 상장 대상 중소기업 범위 확대(제30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)
 - 중견기업 등이 30% 이상 출자하여 법률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술특례 상장 적용대상에 포함
 - 중소기업법 상 규모요건(매출액, 자산) 충족, 첨단기술분야 기업, 중견기업의 투자기간이 3년 이상, 대기업 계열사 제외, 중견기업 출자비율 50% 미만 등

라.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2023/12/28 개정 · 2024/1/1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우수 기술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및 기술특례 관련 규율 강화를 위하여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개편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기술특례 상장 유형 체계화 · 합리화(제28조 제5항, 제67조, 별표 1, 별표 6, 별지 제9호 · 제10호 · 제11호 서식)
 - 기술특례상장 유형을 혁신기술 트랙(혁신기술기업)과 사업모델 트랙(사업모델기업)으로 체계화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, 별표 및 별지 서식 정비
- 딥테크 기업 등에 대한 단수 전문평가 허용(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, 별표 7)
 - 첨단기술 분야 기업으로 충분한 시장평가 및 일정 수준 이상의 벤처 금융투자가 있는 경우 단수 기술평가를 통한 혁신기술 트랙 허용
- 기술특례 상장 대상 중소기업 범위 확대(제28조 제2항)
 - 기술특례 신청 가능 대상 확대에 따라 혁신기술 트랙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의 세부 요건 마련
 - 중소기업법 상 규모요건(매출액, 자산) 충족, 첨단기술분야 기업, 중견기업의 투자기간이 3년 이상, 대기업 계열사 제외, 중견기업 출자비율 50% 미만 등
- 상장 재도전 혁신기술기업 신속심사 근거 마련(제10조 제1항 제4호, 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)
 - 기술성 · 사업성 외의 질적요건 부적합으로 상장예비심사 미승인 통지를 받은 혁신기술기업에 대한 신속심사 근거 마련
-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대한 상장주선인 책임성 강화(제15조 제5항, 별지 제14호 서식)
 - 풋백옵션 부여 및 보호예수기간 연장 등 상장주선인의 책임성이 강화되는 세부 사유를 규정

- 최근 3년 이내에 상장주선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 후 2년 이내에 관리·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사유 발생 등

마.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(2023/12/22 개정 · 2024/1/1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정부의 상쇄배출권 전환기간 연장에 따라 관련 내용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외부사업 감축량 매매거래기간 변경(제5조)
 - 정부에서 외부사업 감축량의 상쇄배출권 전환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고시 개정내용을 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외부사업 감축량 매매거래기간에 반영
 - 해당 고시의 전환 기간 연장 또는 축소시마다 규정 개정을 해야하는 번잡함을 덜기 위해 매매거래기간 관련 상위 법규를 인용하여 명시

바.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(2023/12/7 개정 · 2023/12/11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금융위원회 외국인 투자자 제도 개선방안에 맞추어 외국인 투자자 식별수단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개정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외국인 식별수단을 확대하고 외국인 식별수단 유무를 호가 시에 구분 입력하도록 함(제 35조 및 제61조)
 - 외국인 식별수단은 투자등록증 고유번호 외에 여권번호 및 법인 식별기호(LEI)로 확대
 - 외국인 투자등록 고유번호 부여 여부 구분은 폐지하고, 외국인 식별수단 유무 구분을 신설
 - 외국인 관리 편의성 향상을 위해 내국민 대우 외국인은 식별수단이 없는 것으로 구분 입력

사.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(2023/12/12 개정 · 2023/12/26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최근 장기간 점진적인 주가상승으로 감시망을 회피하는 불공정거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, 시장경보 제도 내 초장기 불건전 요건을 신설하여 선제적으로 투자주의 환기를 수행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투자경고 지정예고 및 지정에 초장기 불건전 요건 신설(제3조의3 제1항 제9호, 동조 제2항 제8호, 동조 제5항 제1호 나목)
 - 당일의 종가가 1년 전날 종가보다 200% 이상 상승하고, 최근 15일 중 상위 10개 계좌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4일 이상인 종목이 최근 15일 중 최고가인 경우를 투자 경고 지정예고 요건으로 함
 - 지정예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장기 불건전 지정예고 요건을 재충족 하는 경우를 투자경고 지정요건으로 함
- 상장종목이 다른 시장으로 이전상장시 기존 시장에서 지정된 시장경보조치 등 해제되도록 개정(제3조의7 제1항 단서, 동조 제3항)
 - 기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되는 경우 코넥스 상장기간 중 지정된 시장경보조치는 모두 해제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코넥스 종목과 동일하게 형평을 맞추어 코스닥시장에서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상장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규제

아. 주식 · 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(2023/12/20 개정 ·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시장조성 역량을 저유동상품 활성화에 보다 집중하는 방향으로 시장조성자 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파생상품시장 내 상품간 균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시장조성상품 배정방식 및 평가방식 등 개선(제9조 제1항 및 제3항, 별표 1)
 - 시장조성자별로 담당하는 시장조성상품수 차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상품배정방식 변경

- 저유동상품 및 시장조성 난이도가 높은 상품을 많이 배정받는 시장조성자의 인센티브 확대 등이 가능하도록 평가방식 및 대가지급방식 등 개선

자. 전문가회의 운영지침 (2023/12/28 개정 · 2024/1/1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우수 기술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'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방안'(2023.7.27)에 따라 전문가회의에 다양한 분야의 산업·기술전문가가 참여 가능하도록 운영제도를 정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전문가집단 운영제도 폐지(제2조, 제3조 제1항·제2항, 제5조, 제6조 제2항, 제13조)
 - 변화하는 기술과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전문가 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전문가집단 운영제도 폐지
-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(NRI) 활용 근거 마련(제6조 제2항)
 - 외부전문가 섭외 시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(NRI)에 등록된 연구자로 전문가회의 구성

차.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(2023/12/28 개정 · 2024/1/1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우수 기술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'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방안'(2023.7.27)에 따라 기술특례상장 유형 체계화·합리화, 딥테크 기업 등의 단수 평가 허용 등 기술특례상장 관련 전문평가제도를 정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기술특례상장 유형 체계화·합리화에 따라 사업모델기업의 전문평가 삭제(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5조, 별표 1, 별표 2)
 - 사업모델기업은 상장주선인이 사업성·성장성을 평가하여 추천함에 따라 전문평가 관련 부분을 삭제
- 딥테크 기업 및 상장재도전 혁신기술기업의 단수기관 전문평가 허용(제5조, 제9조)

- 세척에서 정하는 딥테크 기업 및 상장재도전 혁신기술기업을 단속관 전문평가 및 재평가 허용 대상기업으로 추가

- 전문평가기관의 전문평가 방법 명확화(제5조의2)
 - 전문평가기관의 성실 의무를 규정하고, 평가인력 구성 요건과 현장 답사 횟수 등 평가 방법을 구체화

- 평가신청서 서식 정비(별지 제1호 · 제2호 · 제4호 · 제5호 서식)
 - 기술평가신청서 내 1개 전문평가기관 평가 신청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사업평가신청서 내용을 삭제하며, 별지 순서를 조정
 - 별지 제2호 삭제에 따라 기존 별지 제4호를 제2호로, 별지 제5호를 제4호로, 별지 제3호를 제5호로 각각 변경

- 평가인력 현황표 서식 신설(별지 제3호 서식)
 - 평가기관 내 · 외부 인력의 이력 관리를 위해 평가인력 현황표 서식을 별지로 신설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